

2026년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 모집 공고

도내 도시가스 미공급 등 에너지 이용 취약마을 및 아파트 대상 태양광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기 RE100 소득마을」의 사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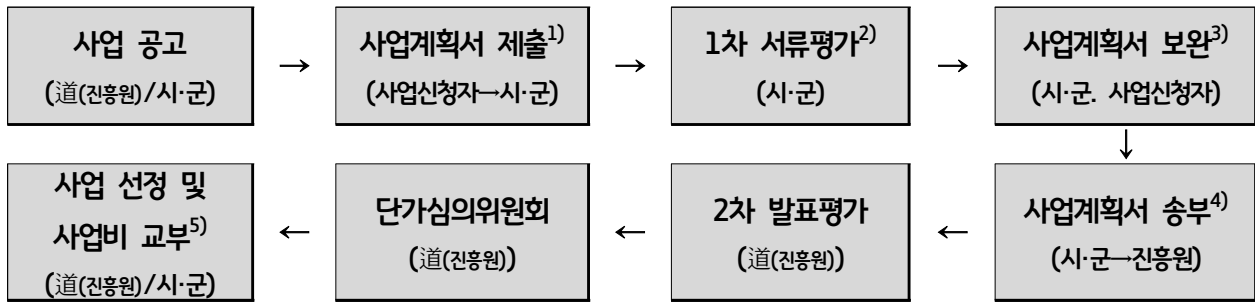
2026. 1. 26.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도내 에너지 이용 취약마을(도시가스 미공급 등) 및 아파트 대상으로 에너지자립 모델을 통합 추진하여 주거형 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복지 실현
- (사업명)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마을형/아파트형)
- (사업기간) '26. 1. ~ '26. 12.
 - ※ 마을(아파트)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내용) 도내 마을 및 아파트에 태양광 설비 설치비 일부 지원
 - ※ (마을형) 도 30%, 시군 40%, 자부담 30% / (아파트형) 도 30%, 시군 30%, 자부담 40%

○ (사업절차)



- 1) 동 공고문에 따른 지원자격 등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작성·제출
- 2) 사업 지원 자격 및 최소요건 충족 여부를 시·군에서 검토
- 3) 지원 자격 최소요건 미 충족 사업신청자에 대해 보완 요청
- 4) 1차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시·군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제출
- 5) 최종 선정 대상 결과 알림 및 도비를 시·군에 교부(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시·군→사업대상자)

2 모집개요

○ (신청대상)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도내 마을 및 아파트(기축)

○ (신청자격) 시·군, 마을공동체*, 시공기업** 등 컨소시엄*** 구성

* 마을형의 경우 마을법인(10세대 이상), 아파트형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세대, 단지) 등

** 경기도 내 본사 또는 지사 소재 기업

*** 아파트 태양광의 경우, 사업 대상 선정 전 또는 후 업체 선정 가능

※ 사업 참여제한

- 공고일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 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상실된 사업자
- 본 기관 및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설비에 한해 사업비(국비 포함)를 지원받은 경우
- 기존 경기도 마을 지원사업(자립마을, 기회소득마을)으로 지원받거나, 공고일 기준 지원 중인 마을주민(참여구성원) 또는 마을부지의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허위 또는 서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할 경우

○ (지원유형)

- (마을형) 에너지 이용 취약 마을에 주택용 태양광(자가소비), 상업용 태양광 발전설비(소규모, 중·대규모 상업용) 설치비 지원

- (아파트형) 아파트 공용부 태양광 발전설비 및 베란다 태양광* 설치비 지원

* 베란다 태양광은 이번 사업을 통한 아파트 공용부 설치 단지만 지원

※ 세부 신청자격 및 요건, 참여제한 등 유형별 세부 지원내용 참고(p.5)

- (지원규모) 당해연도 사업예산 규모에 맞게 선정하여 지원단가 등은 별도 단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

< 부지별 태양광 설비가격 예시(참고용)>

※ 하기 설비가격, 지원단가는 참고치이며, 단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설비가격 확정 통해 선정결과와 설비별 지원단가를 함께 통보 예정임

(단위 : 천원/kW, VAT 제외)

구 분			설비가격
마을	자가용*	주택(3kW 이하)	1,497
	상업용**	건물 위	1,593
		토지 및 주차장 등	2,133
아파트	공동주택*		1,292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2,250

* 2026년 융복합지원사업(한국에너지공단) 표준 단가 적용, 저탄소 모듈 단가 기준

** 2025년 기회소득 사업 단가 기준이며, 심사위원회 심의 시 최종 결정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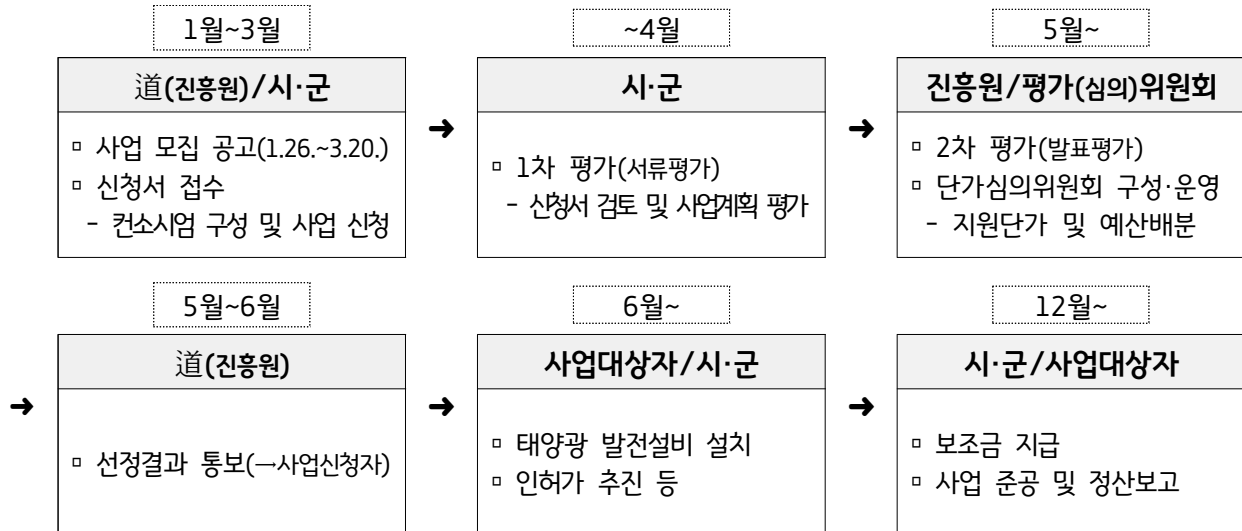
3 신청방법

- (공고기간) 2026. 1. 26. ~ 3. 20. / 시·군 공문 발송일 기준
 - ※ 제출서류 일체 공고마감일까지 시·군→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너지정책팀)에 제출
- (신청방법) 각 시·군에 서류 접수
- (신청절차) 사업신청자 → 시·군 접수(책자, 전자파일) → 진흥원 접수(공문, 전자파일)
- (제출서류) ①사업신청서, ②유형별 사업계획서 및 ③증빙서류(붙임1-마을형, 붙임2-아파트형) 등을 책자로 편철하여 1부(원본) 및 전자파일(USB) 1개 제출
 - ※ 각 시·군별 공고문 내 서류 제출 방법(책자 수량 또는 전자파일 여부) 등 확인 필수
- (문 의 처)
 - 사업 문의(마을형)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에너지정책팀
(☎031-996-9340(8732), 031-985-0834)
 - 사업 문의(아파트형)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에너지정책팀(☎031-985-0519)
 - 신청 및 접수 문의 : 시·군 담당부서 ※ 추후 시·군 공고문 문의처 참조

4

선정개요

- (선정절차) 사업신청서 접수 후, 시·군 및 진흥원(평가·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지원대상 선정 및 보조금 지급



※ 예산 확보 등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방법) 서류 심사 및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고득점자 선정

* 평가일자 및 발표방식 등 2차 평가 대상에 한해 추후 안내 예정

※ 에너지 분야 전문가 등 7명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선정기준) 평가위원회 종합평가점수가 산술 평균으로 70점 이상인 마을(단지)로 선정하되, 고득점순으로 당해연도 사업예산 규모에 맞게 선정

- 점수가 동일한 경우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마을(단지)을 선 순위로 함
- 도시가스 미공급 등 에너지 복지 취약지역을 고려한 마을(단지) 우선 배분 및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시·군 지원 규모(수) 조정 가능

- (평가내용) 사업추진 타당성, 사업계획 수립의 적절성, 경제적 타당성, 주민 참여도, 시공(참여)기업 적절성 등

- (평가점수) 총 100점(가점 5점 별도) 만점으로 종합평가 점수순 선정

- 정량평가(서면) : 유형별(마을, 아파트)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평가
- 정성평가(대면) : 사업추진 타당성, 적절성, 경제성 등 발표평가

※ 유형별 정량·정성평가 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상이(붙임4 참조)

5

세부 사업유형

- ※ 마을형의 경우 자립형과 소득형을 함께 추진하는 **복합형**으로도 신청 가능
- 사업신청서(별지1)에 자립형, 소득형 모두 유형 선택 후 자가용·상업용 용량 기재
(예시) ① 주택+상업용(마을공동기금)+상업용(햇빛소득)
② 주택+중규모(150kW)상업용(마을공동기금)

<마을형-자립형>

○ (신청용량) 주택(3kW) 및 소규모 상업용(10~99kW)

※ 주택 및 소규모 상업용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주택용의 경우 최소 10가구 이상, 가구당 3kW 이내 설치

※ 상업용의 경우 모니터링설비 의무 설치

○ (대상부지) 주택 및 마을회관 등 공용시설

○ (지원목적) 세대 전기료 절감(주택용), 마을 공동기금 창출(상업용)

○ (지원대상) 에너지(전기, 난방) 이용 취약 마을* (10세대 이상)

* 「지방자치법」제7조제1항 및 제2항, 자치조례에 따른 행정리 마을

※ 행정리 단위는 우선 선정하며, 행정동 등 기타 행정구역의 경우에도 주민 참여, 공간적 범위, 대표성, 사업 수행 주체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인정

- 동일한 행정리에 거주(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6개월 이상)하는 10세대(세대당 1인 참여 가능) 이상의 주민참여 비율(이하 “주민지분율”)이 100퍼센트로 구성하여 발전사업을 영위할 사업계획을 제출할 것

※ 단, 타 행정리 주민이 참여시, 주민 참여 비율을 20%까지 인정

※ 단일 마을에서 최소 10세대 이상 충족이 어려운 경우 인접 마을과 공동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주민 참여 비율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대상부지에 자가용 및 상업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발전사업 허가 획득 계획을 사업계획에 포함하고 해당 사업계획이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에 따른 최소 참여요건을 충족할 것

<마을형-소득형>

- (신청용량) 중·대규모 상업용(100~1,000kW)
 - ※ 최소 1개의 100kW 이상 부지 포함 필수
 - ※ 총합 1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개소당 KPX 계량기 의무 설치
(PPA 방식 추진 예정으로, 추후 도 지침 등을 반영하여 추진)
 - ※ 최소 10가구 이상, 가구당 10~15kW 설치 용량을 제한하나, 개인부지·건물 소유자의 경우 최대 30kW 설치 가능
(우선적으로 가구당 용량을 제한하나, 마을 여건 등을 평가시 반영)
 - ※ 상업용의 경우 모니터링설비 의무 설치
- (대상부지) 개인·마을·농지(영농형 포함)·공공 부지 또는 건물 ※ 임야 제외
- (지원목적) 햇빛소득 창출(상업용)
- (지원대상) 에너지(전기, 난방) 이용 취약 마을* (10세대 이상)
 - * 「지방자치법」제7조제1항 및 제2항, 자치조례에 따른 행정리 마을
 - ※ 행정리 단위는 우선 선정하며, 행정동 등 기타 행정구역의 경우에도 주민 참여, 공간적 범위, 대표성, 사업 수행 주체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인정
 - 동일한 행정리에 거주(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6개월 이상)하는 10세대(세대당 1인 참여 가능) 이상의 주민참여 비율(이하 “주민지분율”)이 100퍼센트로 구성하여 발전사업을 영위할 사업계획을 제출할 것
 - ※ 단, 타 행정리 주민이 참여시, 주민 참여 비율을 20%까지 인정
 - ※ 단일 마을에서 최소 10세대 이상 충족이 어려운 경우 인접 마을과 공동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주민 참여 비율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 사업 선정 전 또는 후 법인 설립
 - 대상부지에 상업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발전사업허가 획득 계획을 사업계획에 포함하고 해당 사업계획이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에 따른 최소 참여요건을 충족할 것

<아파트형>

○ (신청용량) 옥상형(단지당 최대 120kW) 및 베란다형(가구당 최대 1kW 미만)

※ 베란다형은 옥상형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지원대상) 경기도 내 기축 아파트* 단지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타운하우스), 타운하우스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주택법 적용 단지만 지원 가능하며, 관리인단이 없을 시 구성 후 신청

※ 「'25년 경기도 아파트 RE100 시범 사업」 참여 단지는 예외적으로 올해 사업 참여 가능

○ (지원내용) 아파트 공용부 태양광 발전설비 및 베란다 태양광 설치비 지원

구 분	총설치비	보조금 지원 비율		자부담
		경기도	시·군	
아파트형	아파트 자체 공개입찰 진행	30%	30%	40%

< 경기도 아파트 태양광 지원사업 추진 예시(참고용)>

(단위 : 천원/kW, VAT 포함)

년도	설치 아파트 지역	설치 용량	총 사업 비용 (아파트 자체 경쟁 입찰 진행)	융복합 사업 설비 가격 (아파트·육지 기준)	
				일반 모듈	저탄소 모듈
'23	고양	150kW	240백만원	1,654	1,786
'24	화성		230백만원	1,877	1,955
	안성		245백만원		
'25	시흥		203백만원	1,642	1,761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정한 '26년 융복합 사업 설비가격(아파트·육지·저탄소모듈 기준)은 1,292천원/kW *VAT제외

○ (지원조건) 추후 선정평가를 위한 필수조건과 우대조건으로 구분

구분	자격 요건
필수조건	①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한 사업 추진 의결 내역 ※ 일시, 직인·서명 등 의결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불인정
	② 한전 계약 종별이 주택용이며, 기관 또는 시공기업 등을 통한 설치 진단 (설치 가능 여부, 예상 설치 용량, 예상 경제성, 예상 절감 효과 등)을 실시한 단지
	③ 베란다 신청 세대의 경우, 실주인과 실거주자 동의서 필수
우대조건	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의1 [별표3]에 따른 행위 허가(태양광 설치 허가)를 위한 입주자 등 1/2 동의 취득 여부 ※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집합건물법」 제15조 등에 따른 동의 여건 충족 필요
	②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해 필요한 자원 조달 계획 수립(또는 반영) 여부 - 장기수선충당금 반영 여부(조정계획 등), 기타 예산을 활용한 자부담 마련 등

6 공통 안내사항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 신청시 참여 협약서는 신청기관 모두 포함하여 작성 제출

<사업비 정산>

- 최종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부가세 환급 대상인 경우에는 도비 지원 비율 만큼 부가세 환급액을 사업비 정산시 시·군에 반납
- 시·군에서는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정산 후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제출

<기타사항>

- 사업참여 컨소시엄간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기도(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
- 총 사업비 규모에 따라 투자심사를 필수로 추진되어야 하며, 20억 이상 ~ 60억 원 미만은 시·군 자체 투자심사, 60억이상~200억 원 미만은 경기도 투자심사 대상임
- 지원 대상에 선정된 자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도비 지원을 취소 환수하며, 향후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사업의 추진 일정 등은 경기도(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경기도(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해석에 따름

[붙임]

- <붙임1> 마을형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식) 9
- <붙임2> 아파트형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식) 30
- <붙임3> 태양광 발전설비 명판(안) 60
- <붙임4> 평가 항목 및 배점표(안) 62

< 마을형 신청 시 유의사항 >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 대상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는 반드시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제출하여야 함
-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등 서류 제출 시 서명,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 사업 대상지 소유자가 공공기관으로 민간에 대여(임대)하여 줄 경우에는 소관 재산관리부서의 동의서 제출(공문 첨부)
- 계통연계가 불가능한 태양광 발전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 및 시공기업은 발전소 예정지의 계통연계 가능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 자가용 설비의 경우 한전에 상계거래 관련 변압기 용량 사전확인 권고
- 시공기업은 신청자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며,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제조사 및 시공부분의 하자보증서(하자보수보증 요율은 협약금액 총사업비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경우는 5%)를 제출
-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5년)와 하자보증(하자이행 보증기간, 5년)을 의무적으로 실시
- 사업 보조금 외 태양광 시공기업 선정 및 계약 과정, 제품 성능과 기대효과, 설치 민원(설치 위치 및 방향 협의, 주민 반대, 시공 문제 등)관련 분쟁과 피해는 경기도, 시·군 및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무관하며 민·형사상 책임이 없음
- 사업 신청서 작성 기재 사항 착오 또는 부정확한 자료 입력 등으로 발생한 선정 결과에 관해 경기도, 시·군 및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등 정부, 지자체로부터 주택용 태양광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주택(에너지공단 주택지원 사업 승인 등)은 본 사업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 구조물 및 제품의 A/S 주체는 시공기업이므로 신청자는 시공기업과 계약체결 시 업체의 무상 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정해야 하며, 보증기간이후에 발생하는 수리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함

- 설비의 설치장소와 관련한 일조권·조망권 분쟁, 신축되는 건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경기도·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개입할 수 없으므로, 신청자는 시공기업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함
- 신청자 및 시공기업은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
- 신청자는 설치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경기도·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설비 착공 이후 준공 전 사업취소/포기 시 복구비용 청구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 진흥원, 지자체는 중재 및 결정 권한이 없음을 확인함
- 상업용 발전(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보조지원 비율만큼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탄소배출권 등의 소유권을 가지고 회수할 수 있음
- 최종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부가세 환급 대상인 경우에는 도비 지원 비율만큼 부가세 환급액을 사업비 정산시 반납
- 지원 대상에 선정된 자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도비지원을 취소 환수하며, 향후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다수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은 사업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제출
- 사업을 수행한 시·군은 완료 1개월 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
- 설치 기준 등 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의 태양광 설치에 관한 규정 등을 우선 적용하며, 그 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지침(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등)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산업통상자원부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 모델을 사용하여야 함
 - (태양광 결정질 모듈 최저효율제) 설치되는 모듈의 정격효율이 17.5% 이상이어야 함
 - (3.3kW 초과 건물형 태양광 구조안전) 신재생설비 안전 확보 방안 마련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3.3kW 초과 설치 경우 구조안전확인 의무화
-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KS인증제품이어야 함(인증제품 확인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하단 “KS인증” 메뉴)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및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출 서류 및 추진과정중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 취소, 지원금의 부정 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 명단공표,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원 대상은 향후 경기도, 시·군 및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우수사례 홍보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시 관련 자료 협조하여야 함
- 설치 완료된 발전설비는 명판(붙임3 양식 활용)을 부착하여야 함(내용 기재 필수)
- 향후 경기도에서 자가소비 재생에너지 발전량 인증서 사업 추진 시 적극 협조해야 함
- 본 사업의 추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 마을형 제출 서류 목록

※ 도(진흥원), 시·군의 필요에 의해 추가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 미비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번호	구분	서류명		비고
1	필수	사업신청서		[별지 1]
2	필수	개인정보 동의서		[별지 2]
3	필수	사업계획서		[별지 3]
4	필수	참여 구성원 서명부		[별지 4]
5	필수	한전 계약 종합정보 내역		
6	필수	사업 협약서(안) 및 첨부 서류*		[별지 5]
7	필수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대장		
8	필수	설치 장소의 건물 등기부등본		
9	필수	참여 구성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전입일 포함		
10	필수	시공기업	사업자등록증	
11	필수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12	필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3	필수		시공실적확인서	
14	필수	제품(시험) 인증서(모듈, 인버터)		(준공 후)
15	필수	저탄소모듈 인증서		(준공 후)
16	해당시	건물 및 토지 사용 승낙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 본인 소유 외 타인 명의 건물/토지에 설치하는 경우 제출		[별지 6]
17	해당시	기타 사업계획서 내 증빙을 위한 실적 및 계획 증빙자료		
18	해당시	거주사실 확인서 ※ 거주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담당 공무원 및 마을 이장 서명 必		
19	해당시	기타 각 시·군별 제출 요청 서류		

* 협약서 및 첨부 서류(2~5)는 소득형의 경우 선정 이후(법인 설립 후)에 제출 가능

[별지 1] 사업신청서

2026년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 사업신청서						
시·군 공무원	소 속	00시·군 000팀		사업유형 (유형 선택)	☐ 마을형(자립형) ☐ 마을형(소득형) ※ 복합형은 둘다 선택 ☐ 아파트형	
	성 명					
	전 화					
신청자 (대표자)	소 속			전 화		
	성 명			직 위		
	E-mail			휴대전화		
시공기업 담당자 (미정인 경우 공란)	소 속			전 화		
	성 명			직 위		
	E-mail			휴대전화		
사업 계획	구분	① 마을형		② 아파트형		
	마을(아파트)명					
	설치 주소					
	자가용 태양광	참여 00세대		단지 전체 00세대 베란다형 참여 00세대		
	상업용 태양광	개소		주상복합 여부	☐ 해당 ☐ 미해당	
	태양광 설치 용량	자가용	kW	옥상형	kW	
		상업용	kW	베란다형	kW	
		전 체	kW	전 체	kW	
	사 업 비 (천원)	총 사업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기타
					아파트의 경우 미작성	
위와 같이 2026년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대표자) : (인)						

[별지 2] 개인정보 동의서(참여자 전원 제출 필수)

2026년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경기도 및 0000시/군의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을 통해 도민들에게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업 신청 관련 자료(신청서, 계약서, 건축물대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 금융 정보 등), 한국전력공사 등록 고객번호, 전력 관련 정보(전기사용량, 요금 등), 보조금 입금 금융계좌번호 등	신청자 및 사업 현황 관리 - 신청자 본인확인 및 사업 이력 관리 - 태양광 설치를 위한 서비스 제공 (신청·접수, 선정, 설치, 사후관리 등) - 해당 사업과 연계 가능한 사업에 활용 등 - 성과 분석, 만족도 조사, 통계 관리 - 사업홍보 등	20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필수사항)

제공받는자	제공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경기도, 도내 31개 시·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수집·이용 내역과 동일	수집·이용 내역과 동일	20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예, ☐아니오)

☐ 개인정보 취급 업무 위탁 내역(고지사항)

위탁 받는 자(수탁업체)	업무내용
도내 31개 시·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 운영 및 관리 - 신청자 본인확인 및 사업 이력 관리 - 사업 신청·접수, 승인 및 태양광 설치 지원 - 현장점검, 사후관리, 사업홍보 등 - 도비 보조금, 시군비 보조금 지급 - 해당 사업과 연계 가능한 사업에 활용 등 - 성과 분석, 만족도 조사, 통계 관리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경기도지사 및 0000시장/군수 귀하

[별지 3] 사업계획서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 마을형 사업계획서

I. 사업 추진개요

□ 사업 목적(배경, 필요성 등)

○

□ 사업 개요

○ 사업 명(마을명) : 00리 경기 RE100 소득마을

- 소재지 : 경기도 00시(군) 00면 00리

○ 사업기간 : '26. 1. 00. ~ 12. 00.

○ 총 사업비(천원)

도비	시·군비	자부담	기타	합 계

○ 사업비 산출 내역서(천원)

세대수	산출근거	총사업비
20	○ 발전시설 [설치비 : 2,068천원/ kW] - 200kW × 2,068천원 = 413,600	413,600

○ 사업내용 :

- 설치용량(kW) : 0,000kW

자가용(주택용, 3kW)		상업용		합 계
가구 수(호)	용량(kW)	부지 유형*	용량(kW)	

* 개인, 시·군유지, 국유지, 도유지, 마을 공용부지, 건물 및 공공 부지, 건물 등(임야 제외)

- 설치위치 :

자가용(주택용, 3kW)	상업용

□ 사업 추진체계

○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계획

-

○ 참여기관별 역할(참여율 포함)

기 관 명		역 할 (예시)	참여율
기관	시·군	- 사업비 매칭 계획 수립 - 사업대상지 관할 지자체 : 사업부지 선정, 적합성 검토 및 분석 - 부대인프라 시설정비 등 사업추진 방향 제시 - 보조금 교부	
민간	마을법인	- 사업 계획 및 지역 민원 수립 - 발전소 운영·관리	
참여 기업	시공기업	- 태양광 설치 검토 및 설계시공 - 사후관리	

○ 참여구성원

- 전체 참여구성원 : 00명

- 마을주민* : (인원) 00명, (지분율) 00%

* 동일한 행정리에 거주하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6개월 이상의 주민

* 시공기업 임직원이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의 동의하에 참여 가능

[증빙] 참여구성원 서명부

○ 지자체 참여 실적 및 지원 노력

- 시·군 주도 공공부지 임대, 주민과 협의회 구성, 조례 개선 등 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대한 시·군 참여 실적 및 지원노력 제시
- 마을법인 운영 및 발전소 운영·수익관리 위한 교육 등 계획 제시

□ 사업 세부내용

○ 사업부지 확보계획

-

○ 사업부지 개요

구 분	부지유형				임대부지	합 계
	공공부지	마을 공용부지	마을주민 부지	합 계		
설치용량(kW)						
설치면적(m ²)						
m ² /kW						

□ 사업 추진절차

○ 사업 추진절차

사업내용	추진 일정													기간 (주)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예시) 법인설립														
예시) 발전사업허가														
예시) 환경영향평가														
예시) 개발행위허가														
...														

(기타 사업 개요 및 추가 확인사항 등 포함)

□ 기대효과

○ 경제성 분석

- 전력 생산량, 경제성 분석 기준, 임대료, 운영관리비 등 경제성 분석 결과 제시

○ 마을주민 소득증대(예상 수익)

- 발전수익, 순수익, 수익률 분석에 따른 주민 예상 수익 제시

○ 온실가스 감축효과

- 온실가스 감축 산정식, 감축량 등 감축효과 분석 결과 제시

ex)주택용 1가구별(월 320kWh 사용기준) 전기요금 연 약57만원 절감

- 태양광 설치시 가구당 전기요금 예상액

: 사용량 320kWh*(요금 48,660원) - 절감금액(47,590원**) = 전기요금(1,070원)

* 320kWh : 사업대상 전체 가구의 월별 전기사용량 평균

** 태양광 예상발전량 : 315kWh (자가용 용량 3kW × 24시간 × 30일 × 14.71%)

II. 발전소 추진계획

□ 사업부지 개요

○ 설치유형별 용도

□ 사업부지 세부내역

구 분	설치 유형	주용도 /지목	설치용량 (kW)	설치면적 (㎡)	지 번	소유주 성명 (법인명)	공공/마을주민 /법인/마을주민外	임대료
1	지상	대						
2	건물	노유자 시설						
3	수상	유지						
...								

※ 임대료 : (공유부지) 지자체별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에 따라 결정
(사유지) 소유자와 적정 시장가로 협의로 진행

[증빙] 1. 일반건축물대장

2. 토지대장

3. 건물 및 토지사용 승낙서(사용자 : 사업희망자, 승낙자 : 소유주)

4. 건물 및 토지 임대차 계약서(임차인 : 사업희망자, 임대인 : 소유주)

□ 발전소 운영기간 : '26. 1. 00. ~ 12. 00.

□ 인·허가 계획

구 분	관련근거 (법률 또는 지자체 조례 등)	대상/비대상	지자체 사전협의 (○, ×)
단일 발전사업허가	○ 00시 0000조례 제00조 -		
환경영향평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			
...			

[증빙] 단일 발전사업허가 관련 지자체 사전협의 결과(공문)

(기타 단일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협의내용 등 포함)

□ 계통연계 계획

○ 계통연계 사전 확인

- 연계 가능 : (예시) 한전 분산형전원용량조회 결과 발전소 예정지가 공사 후 한전계통과 연계가 가능함을 사전 확인 완료

지 번	변전소	DL명	여유용량(kW)
000-0	0*	00	00,000

한전 분산전원연계정보 해당주소로 검색한 계통연계 가능용량 캡처화면

[증빙] 한전 계통연계 가능 회신 문서(계통연계정보 검색 불가 시)
(기타 계통연계를 위한 내용 등 포함)

☐ 수용성·환경성 확보계획

○ 주민수용성 확보방안

- 참여 구성원들에게 사업내용, 추진절차, 마을법인 설립·운영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 실적 제시
- 발전소 인근 주민 등 마을 내·외 미참여 인원에게 대한 수용성 확보 실적 및 계획 등 제시

○ 환경성 검증 계획

- 환경성 검증 및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 등 제시

□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계획

○

III. 발전수익 활용 및 수익배분 계획

□ 발전수익 배분계획

- 발전수익에 대해 참여 구성원 간 수익배분 방식 및 비율 등 제시
 - 참여대상 및 세대당 용량 등을 부합할 수 없는 경우(세대당 용량 초과 등) 마을 전체 주민 수 대비 참여율, 마을 복지 활용 등의 사유 제시
- ※ 선정평가 시 평가점수 반영 및 참여자격 부여

설비용량 (발전용)	발전수익 예상액		비고
00kW	道		
	시·군		
	자부담		

※ 태양광 예상 발전량(연간) : 설비용량 × 24시간 × 365일 × 14.71%

□ 발전수익 집행계획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ex) 마을기업 운영		
ex) 운영비		
ex) 마을복지사업		

【예시】발전수익 집행계획

◆ EX) 발전수익 배분(안)

● 50kW 발전수익 : $50\text{kW} \times 24\text{시간} \times 365\text{일} \times 14.71\% \times \text{SMP} + (\text{REC} \times \text{자부담비용}) =$
 약 0000만원

1. 운영비 : 마을 공동회 운영비 및 유지보수 등 유지관리비
 -약 000천원
2. 차액분 : 마을 발전사업 운영 등 복지사업에 활용
 - 도시가스 대비 LPG 요금 차액지원 : 약 000천원
 - 000 사업 : 약 000천원

IV. 붙임. 첨부자료

□ 지분구조

○ 지분구조(상세)

구 분	성 명	투자금 (천원)	지분율 (%)	주민등록 6개월 이상(○, ×)	동일 행정리 주민(○, ×)	증빙서류 제출(○, ×)	비 고
1	홍길동	0,000	3	○	○	○	토지주
2							
3							
4							
...							
29							
30							

※ 투자금 = 자기부담금, 지분율 = (세대당 설비투자 용량 / 발전소 총 설비용량) × 100

[증빙] 참여구성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발전소 설치부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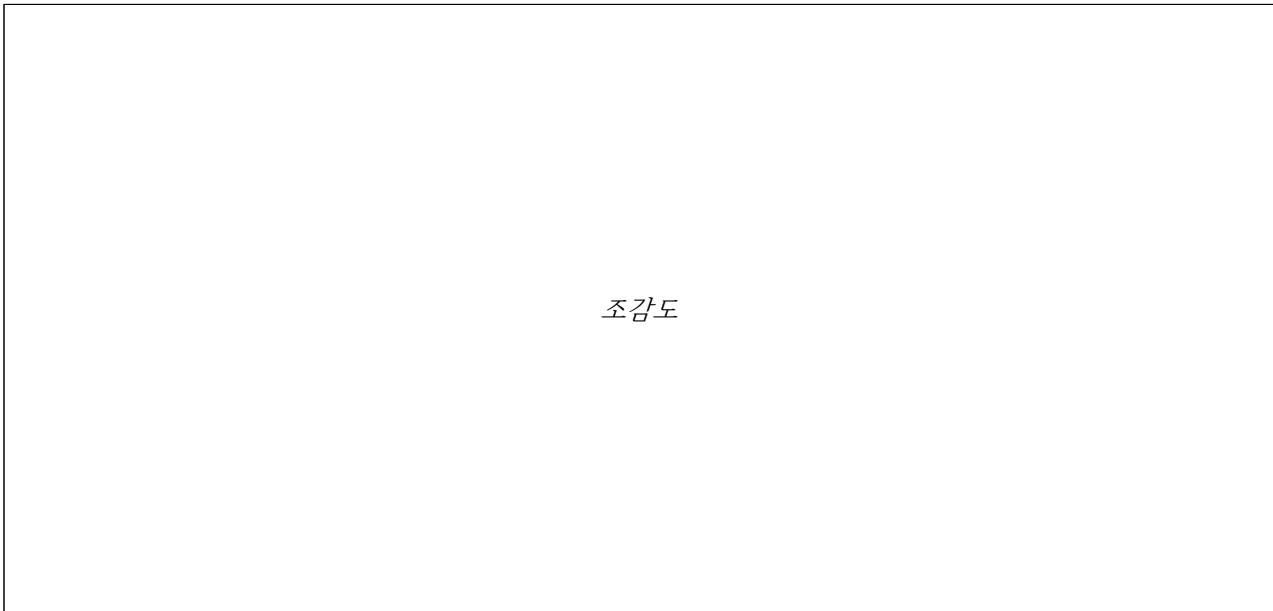
○ 사업부지(m²)

일반부지		건축물		기타		합 계	
부지면적	설치면적	부지면적	설치면적	부지면적	설치면적	부지면적	설치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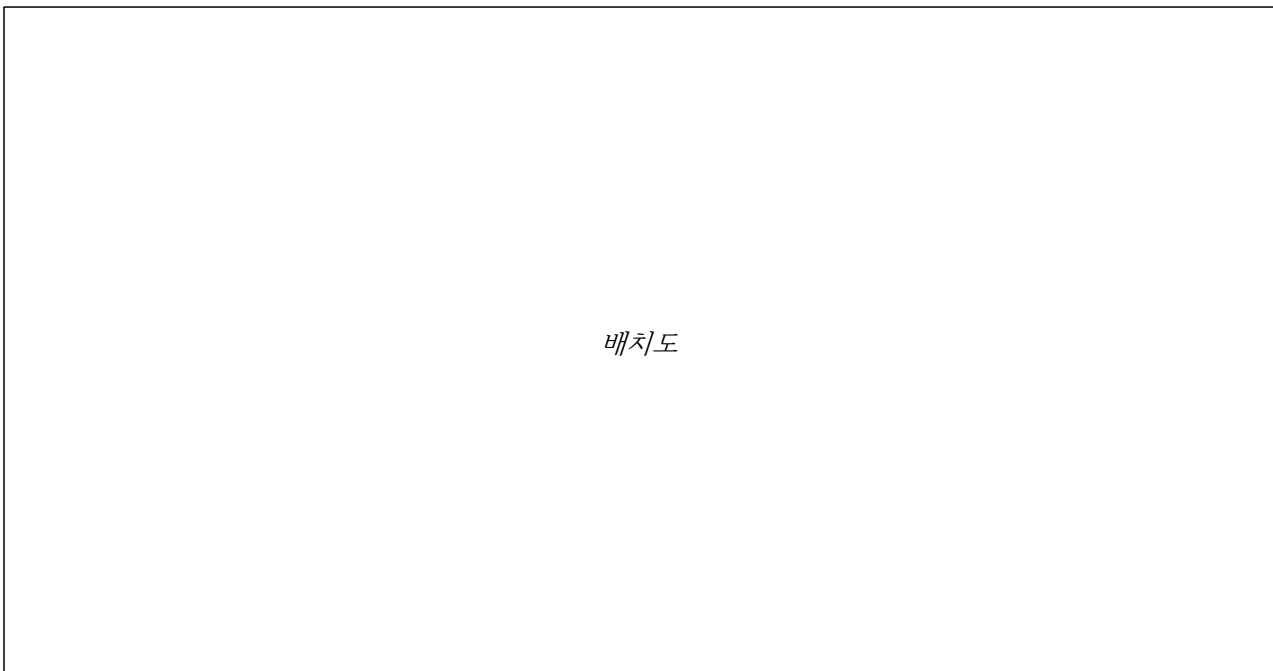
○ 가구별(시설별) 1년간 월별 전기요금 및 설치 예정 장소

사진【월별 검침표(한전)】					
1년간 월별 전기사용량					
사진【설치예정 건물】					
신청자		용도	주택/마을회관 등	설치 주소	

○ 발전소 조감도



○ 모듈배치도



□ 시공기업 현황

○ 시공기업 :

- [증빙] 1. 사업자등록증
2. 자격증 사본 등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4. 시공실적확인서 등

[별지 4] 참여 구성원 서명부

2026년 「경기 RE100 소득마을」 참여 구성원 서명부							
마을명	소재지		가구 수	대표자	전화번호	비 고	
	동	리					
000마을		읍·면·동	00	홍길동	010-0000-0000		
자가용 설비 수요자 현황							
구분	에너지	용량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연간 전력사용량	중복신청 여부확인 (O/X)
예시	태양광	00kW	홍길동	의정부시 청사로 1	010-0000-0000	0,000kW	X
1							
2							
3							
4							
5							
6							
7							
8							
9							
10							
11							
12							
발전용설비 설치위치 현황							
구분	에너지	용량	건물명	위 치	대표자 성명	대표자 전화번호	용 도
1	태양광	00kW	OO 1리 마을회관	의정부시 청사로 1	홍길동	010-0000- 0000	마을회관 등
2							

※ “타사업과 중복 신청 여부”를 시·군에서 파악 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사업계획서 제출

[별지 5] 사업 협약서(안)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 협약서(안)

※ 협약서 항목은 자체실정에 맞게 가감 가능

□ 사업명 : 00시군 00마을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 (세대, kw급)

□ 사업비 : 일금 천원

- 도 비 : 일금 천원

- 시 비 : 일금 천원

- 자부담비 : 일금 천원

□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협약당사자

(가) 전담기관 대표 : 00시장군수

(나) 운영주체 대표 : 00마을 00주민협의체 대표 000

(다) 참여기업 대표 : 0000(주) 대표이사

위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 수행에 관하여 (가), (나), (다)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본 문 조 항

제1조(사업의 목표 및 내용)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은 「(첨부)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에 따른다. 첨부 사업계획서 내용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협약의 체결) (가), (나), (다)는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의 관리) ① (나)와 (다)는 긴밀히 협조하여 설비설치부터 운영까지 사업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가)는 이에 최대한 협조한다.

② (가)가 요구하는 경우 (나)와 (다)는 사업기간과 사업완료 후 설비 운영 기간까지 사업 추진 및 운영 상황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수행 및 책임) (가)는 (나)와 (다)가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나)는 사업 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다)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준공) (나)와 (다)는 사업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종료 즉시, 사유서 및 완료계획서를 (가)에게 제출하여 사업의 계속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① (가)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조금의 50% 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나)와 (다)는 선급금을 수령하기 위해 사전에 (나)와 (다)간의 계약서 및 민간 입금내역 확인서를 (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나)와 (다)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완료에 따라 (나)의 설치확인을 받은 후 잔여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사전에 민간 입금내역 확인서를 (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가)는 (다)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완료에 따라 (나)의 설치확인을 받은 후 잔여보조금 신청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와 (다)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가)는 (나)와 (다)가 사업기간 내에 설치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⑥ (나)는 본 사업에 대한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며, (가)가 요구하는 경우 사업비 관리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결과보고) (다)는 사업완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가)와 (나)에게 제출하며, (가)와 (나)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정산) (나)는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 잔액(부가가치세 환급금 포함) 또는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자료 제출 및 협조 등) (나)와 (다)는 (가)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수행 현장 확인 및 관계 자료의 열람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가)와 (나), (다)는 상호 공동협의하여 본 협약내용과 협약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가)와 (나), (다)는 상호간에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가)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나)나 (다)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고시”라 한다) 별표3에 규정한 위반행위별 사업참여 제한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나)와 (다)는 사업비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기 수령한 보조금을
(가)에게 반환하며, 민간부담금은 (나)와 (다)의 합의하에 처리한다.

제12조(관계법령 등) 본 협약서에서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지방재정법」, 「00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기타 관계 법·규정 등에 따른다.

제13조(해석) 본 협약서 해석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되 (가)를 우선으로 한다.

제14조(기타사항) (가)와 (나), (다)는 본 협약에 의한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이 소기의 사업목적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적극 협조한다.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가), (나), (다)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다)는 (나)에게 해당시설 및 장비의 검수확인 후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보증서(하자보수보증 요율은 본 협약금액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경우는 5%)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가)가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2조(사용자 교육) (다)는 (나)가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 등을 지급하고,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본 의무를 해태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다)에게 귀책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지체상금율) (다)가 (가)(을)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내 사업을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본 보조금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사후관리) ①해당시설에 대하여 (나), (다)는 사업완료일로부터 5년간 성실히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미이행 및 불성실 수행한 (나), (다)에게는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 사업 및 기타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설비의 용도변경 등 금지) 해당시설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자가용 등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나)는 설비를 임의처분 및 허가없이 변경할 수 없다.

첨 부

1.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 사업계획서(별지3) 1부.
2. 운영주체의 사업비 전용계좌 신고서 1부.
3. 운영주체의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4. 운영주체의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1부.
5. 운영주체의 정관 1부.
6. 참여기업의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7. 참여기업의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1부.

20 년 월 일

(가) 전담기관대표 : (인)

(나) 운영주체대표 : (인)

(다) 참여기업대표 : (인)

[별지 6] 건물 및 토지 사용승낙서

『경기 RE100 소득마을』 건물/토지 사용승낙서

- 내 용 : 2026년 「경기 RE100 소득마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 용 량 :
- 설치주소 :
- 설치장소 :
- 신청자(생년월일) :

위 주소 건물·토지의 소유자인 본인은 2026년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 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신청인이 위 주소 건물·토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과 신청인이 향후 설치된 설비의 소유주가 되는 것에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및 0000시장/군수 귀하

< 아파트형 신청 시 유의 사항 >

- 본 사업의 옥상형 태양광 지원은 아파트 공용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한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임 *발전 사업용 보급 사업은 해당 사항 아님
- 본 사업의 아파트(베란다) 태양광 지원은 설치 세대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한 베란다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이며, 옥상형을 신청한 단지에 한해 지원 가능함
- 한국에너지공단 등 다른 사업에서 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설치 기준 등 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태양광 설치와 관계된 법률, 경기도의 태양광 설치에 관한 규정 등을 우선 적용하며, 경기도 규정에 없는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시한 관련 규정의 기준을 따름
- 아파트 태양광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공공 또는 개별(시공기업 등)로 사전 컨설팅(진단) 실시 후 신청 가능
*설치 가능 여부, 예상 설치 용량, 예상 경제성, 예상 절감 효과 등 필요
- 공고 내 명시된 경기도 아파트 태양광 지원사업 추진 예시는 단순 참고용이며 K-APT를 통한 아파트 자체 경쟁 입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아파트 태양광 설비설치 시 추후 REMS 등의 활용을 위한 RTU 등 설비를 의무로 구축해야 하며, 미설치 시 보조금 지급 불가함
- 아파트(베란다) 태양광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경기도 미니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 기준」 등 관련 기준에 따름
- 아파트(베란다) 태양광의 경우, 시·군의 판단에 따라 참여기업을 사전에 모집 후 참여 대상자 모집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여기업 모집 기준, 절차 등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작성된 시·군의 공고 기준으로 추진함
- 사업신청서 작성 기재 사항 착오 또는 부정확한 자료 입력 등으로 발생한 선정 결과에 관해 경기도, 시·군 및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 사업 보조금 외 아파트의 태양광 시공기업 선정 및 계약 과정, 제품 성능과 기대효과, 설치 민원(설치 위치 및 방향 협의, 주민 반대, 시공 문제 등)관련 분쟁과 피해는 경기도, 시·군 및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무관하며 민·형사상 책임이 없음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및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출서류 및 추진과정중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 취소, 지원금의 부정 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 명단공표,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시장·군수)는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정산하고,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제출해야 함
- 본 사업의 추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대상 아파트는 향후 경기도, 시·군 및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우수사례 홍보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시 관련 자료 협조하여야 함
- 설치 완료된 발전설비는 명판(붙임3 양식 활용)을 부착하여야 함(내용 기재 필수)
- 향후 경기도에서 자가소비 재생에너지 발전량 인증서 사업 추진 시 적극 협조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 아파트형 제출 서류 목록

※ 도(진흥원), 시·군의 필요에 의해 추가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 미비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사업 참여 신청 시

번호	구분	서류명	비고
1	필수	사업신청서	[별지 7]
2	필수	개인정보 동의서	[별지 8]
3	필수	사업계획서	[별지 9]
4	필수	사업 협약서(안) 및 첨부 서류*	[별지 10]
5	필수	(아파트) 사업자 등록증	
6	필수	사업 추진을 위한 입주자 대표 의결 내역(태양광 설치 안건)	
7	필수	한전 계약 종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고지서, 한전 계약 내용 확인서 등)	
8	필수	기관 또는 시공기업 등을 통한 설치 진단 서류 (설치 가능 여부, 예상 설치 용량, 예상 경제성, 예상 절감 효과 등 포함)	
9	해당 시	기타 각 시·군별 제출 요청 서류	

* 협약서 및 첨부 서류(5~6)는 아파트 태양광 사업 특성상 업체 선정 이후에 제출 가능

○ 보조금 신청 시

번호	구분	서류명	비고
1	필수	보조금 신청서	[별지 11]
2	필수	사용전검사 확인증(동별 구분 필수, 한국전기안전공사 발급)	
3	필수	(아파트)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4	필수	(시공기업) 사업자등록증, 공사 자격증	
5	필수	입찰 제반 서류	
6	필수	입찰 계약서	
7	필수	계약 보증서 및 하자보증이행증서	
8	필수	공사 관련 서류(대지, 일지, 준공 서류 등 아파트에서 관리한 공사 서류 등)	
9	필수	제품(시험) 인증서(모듈, 인버터)	
10	필수	저탄소모듈 인증서	
11	해당 시	기타 각 시·군별 제출 요청 서류	

*보조금 업체로 지급 시 위임장 등 서류 추가 접수 후 시공기업의 통장 사본 첨부

[별지 7] 사업신청서

2026년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 사업신청서						
시·군 공무원	소 속	00시·군 000팀		사업유형 (유형 선택)	☐ 마을형(자립형)	
	성 명				☐ 마을형(소득형)	
	전 화				※ 복합형은 둘다 선택	
신청자 (대표자)	소 속			전 화	☐ 아파트형	
	성 명			직 위		
	E-mail			휴대전화		
시공기업 담당자 (미정인 경우 공란)	소 속			전 화		
	성 명			직 위		
	E-mail			휴대전화		
사업 계획	구분	① 마을형		② 아파트형		
	마을(아파트)명					
	설치 주소					
	자가용 태양광	참여 00세대		단지 전체 00세대 베란다형 참여 00세대		
	상업용 태양광	개소		주상복합 여부	☐ 해당 ☐ 미해당	
	태양광 설치 용량	자가용	kW	옥상형	kW	
		상업용	kW	베란다형	kW	
		전 체	kW	전 체	kW	
	사 업 비 (천원)	총 사업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기타
					아파트의 경우 미작성	
위와 같이 2026년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대표자) : (인)						

[별지 8]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2026년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경기도 및 0000시/군의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을 통해 도민들에게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업 신청 관련 자료(신청서, 계약서, 건축물대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 금융 정보 등), 한국전력공사 등록 고객번호, 전력 관련 정보(전기사용량, 요금 등), 보조금 입금 금융계좌번호 등	신청자 및 사업 현황 관리 - 신청자 본인확인 및 사업 이력 관리 - 태양광 설치를 위한 서비스 제공 (신청·접수, 선정, 설치, 사후관리 등) - 해당 사업과 연계 가능한 사업에 활용 등 - 성과 분석, 만족도 조사, 통계 관리 - 사업홍보 등	20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필수사항)

제공받는자	제공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경기도, 도내 31개 시·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수집·이용 내역과 동일	수집·이용 내역과 동일	20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예, ☐아니오)

☐ 개인정보 취급 업무 위탁 내역(고지사항)

위탁 받는 자(수탁업체)	업무내용
도내 31개 시·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 운영 및 관리 - 신청자 본인확인 및 사업 이력 관리 - 사업 신청·접수, 승인 및 태양광 설치 지원 - 현장점검, 사후관리, 사업홍보 등 - 도비 보조금, 시군비 보조금 지급 - 해당 사업과 연계 가능한 사업에 활용 등 - 성과 분석, 만족도 조사, 통계 관리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경기도지사 및 0000시장/군수 귀하

[별지 9] 사업계획서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 아파트형 사업계획서

□ 사업목적(배경, 필요성 등)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비 : 000백만원(도비 000, 시비 000, 민간 000)
- 주관/참여 : /
- 시공기업 :
 -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자격증 사본, 신용평가등급확인서(B0이상)
 - ※ 사업 참여 선정 후 입찰 진행인 경우, 추후 선정 기재

□ 예상 소요 사업비 ※업체 기선정 단지의 경우 확정액으로 기술

사업내용	예상 소요 예산(백만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0					
0					

□ 자원 확보 방안

- 장기 수선 충담금 활용 또는 한전보조금 활용 등 자부담 확충 방안에 대해 기술하며, 현재 의사결정 단계 및 자부담 활용을 위한 내부 절차 추진 현황 기술

□ 예상 소요 사업비 산출 내역서(단위: 천원)

※업체 기선정 단지의 경우, 확정 품목 및 확정액 기준으로 작성

항목	산출 근거	예상 총사업비 ※VAT 제외 기준 작성
	0	
	0	

※ REMS 등의 활용을 위한 RTU 등 설비설치 필수, 미 설치 시 보조금 미지급

□ 추진체계

- 시·군 :
 - 역할 : (EX: 예산편성 및 집행)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기업 :
 - 역할 : (EX: 설계 및 시공, 사후관리 등)
- 민간 : 입주자 대표 + 시·군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선택)
 - 역할 :

□ 추진경과

- 사업공고('25. 6월)
-
-
-

□ 사업 추진절차

사업내용	추진 일정													기간 (주)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예시) 컨소시엄 구성														
예시) 소유자 등 동의서 취합														
예시) 태양광 설비 설치														
예시) 행위허가 등 행정절차														
...														

□ 인·허가 계획

구 분	관련근거 (법률 또는 지자체 조례 등)	대상/비대상	지자체 사전협의 (O, X)
	○ -		
	○ -		

□ 단지 배치도 및 태양광 설비설치 예상 배치도

※ 아파트(베란다) 태양광 동시 신청 단지의 경우 베란다 태양광 예상 배치도도 제출

□ 사업의 기대효과

- 경제성 분석
 - (전력 생산량, 경제성 분석 기준, 임대료, 운영관리비 등 경제성 분석 결과 제시)
- 입주민 관리비 절감 효과
 - (설치 전후 관리비 절감 예상효과)
- 온실가스 감축효과
 - (온실가스 감축 산정식, 감축량 등 감축효과 분석 결과 제시)

□ 설치 후 활용계획(관리·운영 계획 포함)

- -
- -

[별지 10] 사업 협약서(안)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 협약서(안)

※ 협약서 항목은 시·군 자체 실정에 맞게 가감 가능

□ 사업명 : 0시군 00단지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

□ 사업비 : 일금 천원

- 도비 : 일금 천원

- 시비 : 일금 천원

- 자부담비 : 일금 천원

□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협약당사자

(가) 전담기관 대표 : 00시장·군수 000

(나) 운영주체 대표 : 00아파트 입주자대표 000

(다) 참여기업 대표 : 0000(주) 대표이사

위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 아파트 태양광 사업 수행에 관하여 (가), (나), (다)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본 문 조 항

제1조(사업의 목표 및 내용)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은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 (아파트형)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에 따른다. 사업계획서 내용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협약의 체결) (가), (나), (다)는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의 관리) ① (나)와 (다)는 긴밀히 협조하여 설비설치부터 운영까지 사업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가)는 이에 최대한 협조한다.

② (가)가 요구하는 경우 (나)와 (다)는 사업기간과 사업완료 후 설비 운영 기간까지 사업 추진 및 운영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수행 및 책임) (가)는 (나)와 (다)가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나)는 사업 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다)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준공) (나)와 (다)는 사업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종료 즉시, 사유서 및 완료계획서를 (가)에게 제출하여 사업의 계속을 승인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① (가)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조금을 정해진 규정 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나)와 (다)는 선급금을 수령하기 위해 사전에 (나)와 (다)간의 계약서 및 민간 입금내역 확인서를 (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나)와 (다)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완료에 따라 (나)의 설치확인을 받은 후 잔여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사전에 민간 입금내역 확인서를 (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가)는 (다)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완료에 따라 (나)의 설치확인을 받은 후 잔여보조금 신청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와 (다)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가)는 (나)와 (다)가 사업기간 내에 설치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⑥ (나)는 본 사업에 대한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며, (가)가 요구하는 경우 사업비 관리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결과보고) (다)는 사업완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가)와 (나)에게 제출하며, (가)와 (나)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정산) (나)는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잔액 또는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자료 제출 및 협조 등) (나)와 (다)는 (가)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수행 현장 확인 및 관계 자료의 열람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가)와 (나), (다)는 상호 공동합의하여 본 협약내용과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가)와 (나), (다)는 상호간에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가)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나)나 (다)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고시”라 한다) 별표3에 규정한 위반행위별 사업참여 제한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 될 경우
- ③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나)와 (다)는 사업비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기 수령한 보조금을 (가)에게 반환하며, 민간부담금은 (나)와 (다)의 합의하에 처리한다.

제12조(관계법령 등) 본 협약서에서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지방재정법」, 「00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기타 관계 법·규정 등에 따른다.

제13조(해석) 본 협약서 해석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되 (가)를 우선으로 한다.

제14조(기타사항) (가)와 (나), (다)는 본 협약에 의한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 아파트 태양광 지원사업이 소기의 사업목적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적극 협조한다.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가), (나), (다)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다)는 (나)에게 해당시설 및 장비의 검수확인 후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보증서(하자보수보증 요율은 본 협약금액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경우는 5%)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가)가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2조(사용자 교육) (다)는 (나)가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 등을 지급하고,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본 의무를 해태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다)에게 귀책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지체상금율) (다)가 (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내 사업을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본 보조금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사후관리) 해당시설에 대하여 (나), (다)는 사업완료일로부터 5년간 성실히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미이행 및 불성실 수행한 (나), (다)에게는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 사업」 아파트 태양광 지원사업 및 기타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설비의 용도변경 등 금지) 해당시설은 공용부 전기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또는 말소할 수 없다.

첨 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운영주체의 사업비 전용계좌 신고서 1부.
3. 운영주체의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4. 운영주체의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1부.
5. 참여기업의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6. 참여기업의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1부.

2026년 월 일

(가) 전담기관대표 : (인)

(나) 운영주체대표 : (인)

(다) 참여기업대표 : (인)

[별지 11] 아파트 태양광 보조금 신청서

「경기 RE100 소득마을」 아파트 태양광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				연 락 처	
설 치 장 소					
참 여 기 업				연 락 처	
설 치 용 량				관 리 번 호	
보조금 지급 요청 금액 * VAT포함여부기입	합계	경기도 보조금		시·군 보조금	
	원	원		원	
입금 계좌 번호				은행명	예금주
위와 같이 경기도 및 〇〇〇〇시/군의 「경기 RE100 소득마을」 아파트 태양광 지원 사업의 태양광 설비설치가 완료되어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참여기업 (인)					
경기도지사 및 〇〇〇〇시장/군수 귀하					
※[붙임] 제출 서류 참조					

3 아파트(베란다)형 제출 서류 목록

※경기도, 시·군의 필요에 의해 추가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 미비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사업 참여 신청 시

번호	구분	서류명	비고
1	필수	사업신청서	[별지 12]
2	필수	개인정보 동의서	[별지 13]
3	필수	보조금 반환에 관한 동의서	[별지 14]
4	필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한 관리주체 동의서	[별지 15]
5	필수	소유자 및 세입자 동의서	[별지 16]
6	필수	표준 설치 계약서*	[별지 17]
7	해당 시	기타 각 시·군별 제출 요청 서류	

*표준 설치 계약서는 시·군의 판단하에 아파트(베란다) 태양광 사업 특성상 업체 보조금 신청 시 제출 가능

○ 보조금 신청 시

번호	구분	서류명	비고
1	필수	보조금 신청서	[별지 18]
2	필수	설치완료 확인서	[별지 19]
3	필수	현장 점검표	[별지 20]
4	필수	준공 사진	[별지 21]
5	해당 시	기타 각 시·군별 제출 요청 서류	

*보조금 업체로 지급 시 위임장 등 서류 추가 접수 후 시공기업의 통장 사본 첨부

○ 기타 서류

번호	구분	서류명	비고
1	해당 시	철거 신청서	[별지 22]
2	해당 시	양수 포기서	[별지 23]
3	해당 시	부동의서	[별지 24]
4	해당 시	변경신고서	[별지 25]

*철거, 양수·양도 등을 위해 시·군의 필요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별지 12] 아파트(베란다) 태양광 사업신청서

0000시/군 「경기 RE100 소득마을」 아파트(베란다) 태양광 사업신청서

신 청 인			연 락 처		
세 부 주 소	(동 / 호수)				
주 택 형 태	공동주택(아파트) ()		설 치 용 량	W	
설 치 장 소	난간(), 기타()		전 기 사 용 량	kWh	
설 치 여 건	방위각()	음영여부()	난 안 정 간 성		
설 치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사업기간 : 일)				
설 치 제 품	거치형 / 앵커형 / 콘솔형 W (참여기업명 :)				
설 치 비 ※ VAT포함여부/입	총사업비	도비 보조금	시·군비 보조금	자부담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2026년 「경기 RE100 소득마을」 아파트(베란다) 태양광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참여기업 (인)					
경기도지사 및 0000시장/군수 귀하 ※ 제출 서류 목록 확인하여 제출					

[별지 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 - 아파트(베란다) 태양광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026년 경기도와 0000시/군에서 추진하는 「경기 RE100 소득마을」 아파트(베란다) 태양광 지원사업의 참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항목 】

- 수집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전자메일, 설비설치 현황 및 설치 사진 등 사업 신청 및 보조금 신청서에 있는 정보 일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 보조금 지원 기준 적합·중복 참여 여부 등 확인 목적
- 사업 성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목적
-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의견 수렴 등 원활한 운영 목적
-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및 연구·통계자료에 활용 목적
- 설비 운영 현황 수집 및 사업홍보 활용 목적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 상황(호우·태풍 등) 관련 안내 문자 통보 목적

【 개인정보 보유기간 】

- 보존기간: 5년
- 보존사유: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유기간 동안 보존 필요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 정보 주체는 위 지원사업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참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 . .

신청인(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및 0000시장/군수 귀하

[별지 14]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 - 아파트(베란다) 태양광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 참여업체가 설치한 태양광 설비를 신청인이 5년 이내에 철거하는 경우, 해당 시·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0000시/군은 기지급한 보조금을 태양광 설비의 사용기간에 따라 환수율을 적용하여 신청인에게 반환명령 합니다. ※사용기간은 설치완료일을 포함합니다.
- 사용기간 1개월 미만으로 철거하는 경우는 보급업체가 보조금을 반환명령 합니다.
- 다음과 같은 사항은 사용기간에 따른 환수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시공 기준 미준수 등 보급 사업공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설비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 보급업체에 기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명령 합니다.
 -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무단 철거·처분 할 경우 기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명령 합니다.
 - 관련 법, 보급 사업공고 등의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책임 소재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명령 합니다.
 - 단, 설비 소유자가 거주지 이전 시, 양도 및 이전설치 불가할 경우, 보조금 미반환 할 수 있습니다.

0000시/군 아파트(베란다) 태양광 지원사업 참여자(신청인, 시공기업)는
위 사항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공기업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및 0000시장/군수 귀하

[별지 15]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한 관리주체 동의서

동 의 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한 관리주체 동의서)

- ☐ 공동주택명 : ☐ 연 락 처 :
- ☐ 신 청 인 : ☐ 연 락 처 :
- ☐ 세 부 주 소 : (동 / 호수)
- ☐ 참여기업명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제2항의 5호」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3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의 4호」에 근거하여 상기
신청인의 「2026년 경기 RE100 소득마을」 아파트(베란다) 태양광 지원사업 신청
및 설치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0000 아파트) 관리소장 (인)

경기도지사 및 0000시장/군수 귀하

[별지 16] 소유자 및 세입자 동의서

동 의 서			
☐ 소 유 자 :		☐ 연 락 처 :	
☐ 세 입 자 :		☐ 연 락 처 :	
☐ 설 치 주 소 :	(동 / 호수)		
☐ 참여기업명 :			
「2026년 경기 RE100 소득마을」 아파트(베란다) 태양광 지원사업으로 해당 소유 주택에 베란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함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유 자 : (인) 세 입 자 : (인) 경기도지사 및 0000시장/군수 귀하			

[별지 17] 표준설치계약서

표준설치계약서						
계약 당사자	신청인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E-MAIL		
	시공기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E-MAIL		
계약 내용	분 야	베란다 태양광	설비타입		설치용량	W
	설치장소				도 지원금	일금 원 ※VAT포함여부기입
	설치기간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시·군	지원금	일금 원 ※VAT포함여부기입	
	사업비 총액	일금 원 ※VAT포함여부기입	지원금	일금 원 ※VAT포함여부기입		
	계약금	일금 원 ※VAT포함여부기입	신청인 자부담	일금 원 ※VAT포함여부기입		
본문 조항	제1조 (사전안내) ① “참여기업”은 “신청인”과의 계약 체결 전,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설치 현장 여건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공고 사항, 설비 현황, 설치 장소, 지원 금액, 설비 관리 유의 사항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신청인”과 “시공기업”은 관련 법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금)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부담 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신청인 부담 비용) ① “신청인”은 “시공기업”이 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시공기업”의 설치비 지급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부담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공기업”은 “신청인”에게 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적극 안내하며, “신청인”은 “시공기업”이 보조금 수령을 위한 관련 제반 서류 작성·제출에 적극 협조한다. 제4조 (보조금 수령 방법) ① “신청인”은 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에 대해 0000시/군의 공고에 따르며, 이에 따른 필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본인 또는 시공기업 등) ② 0000시/군은 “시공기업”으로부터 보조금 지급요청을 받은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시공기업”에 지급한다. 단, 그 특별한 경우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계약의 해약) ① “신청인”과 “시공기업”은 상호 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신청인”과 “시공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0000시/군에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해당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신청자)와 (시공기업) 간 합의 후 사업 포기 신청을 하는 경우 2. 사업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 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3.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 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시공기업”은 기 수령한 사업비가 있을 시 본 사업에 사용된 사업비를 증빙하고 잔액은 “신청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제6조 (보관)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신청인”, “시공기업”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약 조항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 설치된 태양광 설비에 대해 “참여기업”은 설치 종료일로부터 최소 5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책임진다. ② “신청인”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시공기업”의 무상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시공기업”은 “신청인”이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안전성 이행) 안전성(추락, 전기적 사고 등), 일조권, 조망권 분쟁, 관련 법 위반 등 본 베란다 태양광 설비의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신청인”과 “시공기업”에 있음을 확인한다. 제4조 (지체상금율) “시공기업”이 “신청인”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후 설치기간 내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체일 하루당 계약 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경기도 및 0000시/군이 사업 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 효력을 가진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공기업			(서명 또는 인)		

0000시/군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 - 아파트(베란다) 태양광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		연 락 처	
설 치 장 소			
참 여 기 업		연 락 처	
설 치 용 량		관 리 번 호	
보조금 지급 요청 금액	합계	경기도 보조금	시·군 보조금
	원	원	원
입금 계좌 번호		은행명	예금주

위와 같이 경기도 및 0000시/군의 「경기 RE100 소득마을」 아파트(베란다) 태양광 지원사업의 태양광 설비설치가 완료되어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참여기업

(인)

(인)

경기도지사 및 0000시장/군수 귀하

※ 제출 서류 목록 확인하여 제출

[별지 19] 아파트(베란다) 태양광 설치 완료 확인서

0000시/군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 - 아파트(베란다) 태양광 설치 완료 확인서	
경기도·000시/군의 아파트(베란다) 태양광 지원사업 참여자(신청인, 시공기업)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확인 후 ☒)	
가. 본 사업은 아파트(베란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를 희망하는 신청인에게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여 설치하는 사업임을 확인합니다.	☐
나. 신청인과 시공기업은 본 지원사업의 주체이며, 설치 기대효과 및 사후관리 (최소 5년 무상 하자보증) 등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고, 설치 후 양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경기도 및 000시/군은 민·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다. 설비의 설치와 관련한 일조권, 조망권, 안정성 등 설치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하며,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경기도 및 000시/군은 개입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라. 시공기업은 신청인이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신청인은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 소홀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마. 신청인과 시공기업은 관련 규정을 위배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 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 보급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바. 신청인은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의무 사용기간(5년)이 부여되며, 설비를 양도·이전·폐기할 경우 해당 000시/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설비를 폐기하는 경우 설치자는 해당 000시/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무단 폐기 적발 시 기간에 상관없이 보조금 100% 환수 ② 설비를 이전하는 경우 설치자는 해당 000시/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 폐기, 이전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설치자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 ☐ ☐
사. 아파트(베란다) 태양광 설치 신청자는 아래 사항을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① 베란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현장 점검표에 의거 설치를 확인 하였음. ② 정상 가동됨을 확인하고, 교육 및 안내자료를 수령 하였음을 확인 하였음.	☐ ☐
보조금 지원 가구에 대해서 설치 전·후 전력 사용량은 향후 사업 계획 수립 및 분석 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시공기업	(인)

아파트(베란다) 태양광 설비설치 확인 현장 점검표

확인 사항	내용					
설치 형태	☐ 난간상부 거치형 ☐ 난간하부 거치형 ☐ 기타					
설치 경사각 및 방향	방위각 ()도, 경사각 ()도 (북0, 동90, 남180, 서270)					
설치 위치	(결속지점 : 개소)					
모듈	모델명		출력(Wp)		수량(매)	
인버터	모델명		정격용량(W)		수량(매)	
계통연계방식	☐ 콘센트연결형 ☐ 기타()					

종류	확인 사항		내	용
동작상태 확인	확인 일시		20 . . . 시	분 ~ 시 분
	확인 항목		· 외기온도(℃) · 날씨() · 전압AC(V) · 전류AC(A) · 주파수(Hz) · 일사량(W/m ²)	
	인버터	동작상태	☐ 정상출력 ☐ 미출력	
		출력값	kW (시 분)	

NO	항목	점검위치	점검방법	판정기준	판정	
1	태양 전지판	모듈	모듈 후면 또는 측면	명판의 모델, 용량 확인	· 인증제품 또는 시험성적서	☐ 적합 ☐ 부적합 ☐ 제외
		설치용량	모듈 전면	모듈 매수 확인	· 설계용량 동일여부 *부득이한 경우 110%이내	☐ 적합 ☐ 부적합 ☐ 제외
		음영발생	모듈 전면	육안 확인	· 음영 발생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NO	항목		점검위치	점검방법	판정기준	판정
2	전기 배선	모듈 배선	모듈 후면	육안 확인	- 바람에 흔들림이 없게 단단히 고정(코팅된 와이어 또는 동등 이상(내구성) 재질의 타이) - 군별, 극성별로 별도 표시	☐ 적합 ☐ 부적합 ☐ 제외
3	인버터	사양	인버터 전면 또는 측면	명판의 모델, 정격 용량	· 신청 사양과 동일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설치 상태	설치 장소	절연검사	· 설치 장소의 적정성, 절연 상태	☐ 적합 ☐ 부적합 ☐ 제외
		인버터 설치 용량 및 입력전압	인버터 및 모듈	인버터 입력 및 모듈 출력 확인	- 모듈 설치용량이 인버터 설치 용량의 105%이내 - 모듈 개방전압(후면명판)은 인버터 입력전압(인증서, 시험 성적서)의 범위 이내	☐ 적합 ☐ 부적합 ☐ 제외
		표시 사항	인버터 또는 별도 표시창	육안 확인	· 모듈 및 인버터의 출력 전압, 전류, 전력, 주파수, Peak, 누적 발전량	☐ 적합 ☐ 부적합 ☐ 제외
4	모듈 거치대	설치 상태	설치 장소	육안 확인	· 난간부와 2개소 이상 견고하게 결속	☐ 적합 ☐ 부적합 ☐ 제외
		재질	난간부 및 거치대	육안 확인	- 내부식성 자재 사용(스테인레스, 용융아연도금 등) - 체결용 볼트, 너트 등의 제품 규격 사용	
5	통합 명판	표시 항목	관리 감안	육안 확인	· 용량 및 제작사 등 기기별 표시 사항 부착(AS연락처 등)	☐ 적합 ☐ 부적합 ☐ 제외
6	운전교육	운전 매뉴얼	점검 현장	신청자와의 면담	· 소비자 주의 사항 및 운전 매뉴얼 제공, 교육 실시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2026. . .

신 청 자 : (서명날인)

시공기업명 : (서명날인)

현장확인자 : (서명날인)

경기도지사 및 0000시장/군수 귀하

[별지 21] 아파트(베란다) 태양광 준공사진

준공 사진 (시공기업용)

○ 설치장소 :

구분	설치 전	설치 후
거리가 가까운 사진 (내부)		※ 명판 포함
	촬영일자 :	촬영일자 :
거리가 먼 사진 (외부)		
	촬영일자 :	촬영일자 :

※ 내부 사진은 명판부착 후 촬영 / 외부 사진은 동·호수 확인 가능토록 촬영

[별지 22] 아파트(베란다) 태양광 철거 신청서

※설비 소유자가 거주지 이전 시, 양도 및 이전설치 불가할 경우

아파트(베란다) 태양광 철거 신청서				
소유주	성 명			
	연 락 처		관리번호	
	설치 장소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설 비 내 역	아파트(베란다) 태양광 W		주택형태	공동주택()
			설치장소	난간(), 옥상(), 기타()
	최초 설치일	년 월 일	사용전 검검일	
사 유				
상기와 같이 아파트(베란다) 태양광의 철거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기도지사 및 0000시장/군수 귀하				
※ 제출 서류 목록 확인하여 제출				

[별지 23] 아파트(베란다) 태양광 양수 포기서

양수 포기서 (양수자용)			
공동주택명		연락처	
양수자(세입자)		연락처	
세부주소	(동/호수)		
관리번호			
포기사유	☐ 미관문제 ☐ 소음문제 ☐ 조망권 방해 ☐ 기타		
기타 선택 시 사유 기재			
상기와 같이 아파트(베란다) 태양광의 양수를 포기합니다. 20 . . . 양수자(세입자) (서명)			
경기도지사 및 0000시장/군수 귀하			

[별지 24] 아파트(베란다) 태양광 부동의서

부동의서 (아파트 관리소장용)			
공동주택명		연락처	
신청인		연락처	
세부주소	(동 / 호수)		
참여기업명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제2항의 5호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7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제4호에 근거하여 상기 신청인의 「경기 RE100 소득마을」 아파트(베란다) 태양광 지원사업 신청 및 설치에 부동의 합니다. 20 . . . (000 아파트) 관리소장 (인) 경기도지사 및 0000시장/군수 귀하			

[별지 25] 아파트(베란다) 태양광 변경 신고서

아파트(베란다) 태양광 변경 신고서 (신청자용)				
변경전 소유주	성명			
	연락처		관리번호	
	주소		계약기간	20 . . . ~ . . . (년간)
변경후 소유주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관리번호	신고 후 자동 생성됨
	주소		계약기간	20 . . . ~ . . . (년간)
설비 내역	태양광 W		주택형태	공동주택()
	최초 설치일	20 . . .	설치장소	난간(), 옥상(), 기타()
			사용전 검검일	20 . . .
	이전 설치일	20 . . .	사용전 검검일	20 . . .
사유	☐ 양도 ☐ 장소변경 ☐ 명의변경 ☐ 매매 ☐ 기타			
기타의 경우	(주요내용 서술)			
상기와 같이 아파트(베란다) 태양광의 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2026. . . 신 청 자 (서명) 경기도지사 및 0000시장/군수 귀하				

<마을형, 아파트형>

사업명	경기 RE100 소득마을(총 ○○○kW)		
용 량	모듈: ○○○W x ○○EA, 인버터: ○○kW x ○○EA		
관리번호	해당 시 작성		
준공년월			
하자보증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 (하자보증기간 종료 이후에는 자부담 수리)		
설 치 전문기업	참여 시공기업	기 업 명:	
		대표전화:	
		홈페이지:	
	시공 책임자	성 명:	
		직통전화:	
		휴 대 폰:	
	A/S 책임자	성 명:	
		직통전화:	
		휴 대 폰:	

※ 본 설비는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을 통해 경기도 및 0000 시/군 보조금이 지급된 설비입니다. A/S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참여 시공기업 및 A/S 책임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시/군
로고 삽입)

0000시/군
000000과
(031-000-0000)

- 규격 : 가로 12cm × 세로 16cm
- 재질 : 바닥 판 - 아크릴
(투명 아크릴 합체)
- 색상 : 하얀 바탕에 도안 양식 적용
- 부착 방법
 -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지정된 장소에 전문기업이 자체 제작하여 **인버터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
 - 유성펜으로 내용 기재 시 내용 기재 후 테이프 처리 등으로 내용이 지워지지 않도록 조치할 것

<아파트형(베란다)>

사업명	아파트(베란다) 태양광 발전설비(W)		
용 량	모듈: ○○○W x ○○○EA, 인버터: ○○kW x ○○○EA		
관리번호	해당 시 작성		
준공년월			
하자보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 (하자보증기간 종료 이후에는 자부담 수리)		
설 치 전문기업	기 업 명 :		
	대표전화 :		
	홈페이지 :		
	시공 및 A/S 책임자	성 명 :	
		직통전화 :	
		휴 대 폰 :	

※ 본 설비는 경기도 및 0000시/군 보조금이 지급된 설비로 **이전 용도 전환, 양도 및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0000시/군 00000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로고 삽입)

0000시/군
000000과
(031-000-0000)

- 규격 : 가로 12cm × 세로 16cm
- 재질 : 바닥 판 - 아크릴
(투명 아크릴 합체)
- 색상 : 하얀 바탕에 도안 양식 적용
- 부착 방법
 -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지정된 장소에 전문기업이 자체 제작하여 지정된 위치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
 - 유성펜으로 내용 기재 시 내용 기재 후 테이프 처리 등으로 내용이 지워지지 않도록 조치

붙임4
평가 항목 및 배점표(안)
<마을형>

평가 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 (가점포함)
합계		100(105)
< 정성평가 >		70
사업추진 타당성	- 사업목적의 부합성, 사업추진 체계 적절성	20
사업 계획 수립의 적절성	- 사업 계획 타당성, 사업 수행 능력	30
경제적 타당성	- 재원조달 타당성, 수익(재생에너지 발전 포함) 활용 적절성	20
< 정량평가 >		30
주민 참여도	- 주택 수(자가용), 참여주민 수	10
시공(참여)기업의 적절성	- 참여기업 시공실적 및 경영상태	10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여도	- 발전용량 규모	10
< 가점 >		5
시·군별 차등	- 시·군 규제 등급, 재정자립도	2
유형별 우대	-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도시가스 미공급 등)	3

※ 세부 평가 항목별 주요 평가 내용은 사업 지침 참고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진행

<아파트형>

평가 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 (가점포함)
합계		100(105)
< 정성평가 >		70
사업추진 타당성	- 사업목적의 부합성, 사업추진 체계 적절성	20
사업 계획 수립의 적절성	- 사업 계획 타당성, 사업 수행 능력	30
경제적 타당성	- 자원조달 타당성, 수익(재생에너지 발전 포함) 활용 적절성	20
< 정량평가 >		30
주민 참여도	- 주민동의률(%)	20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여도	- 발전용량 규모	10
< 가점 >		5
시·군별 차등	- 시·군 규제 등급, 재정자립도	2
유형별 우대	- 미니태양광 설치 참여율, 자기부담금 추진도	3

※ 세부 평가 항목별 주요 평가 내용은 사업 지침 참고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진행